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 정무위원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금감원을 통한 국정조사인사청문회 관련자 신용정보 제공〉
■ 허 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183호)

2024. 11.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금감원을 통한 국정조사·인사청문회 관련자 신용정보 제공 ...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허 의원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8. 26.
3. 회 부 일 : 2024. 8.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업무 목적 외 신용정보의 누설 및 이용 금지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정조사뿐 아니라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공직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에도 근거 규정이 미비하여 충분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회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또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자료로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국회법」 제65조의2제3항에 따른 특별위원회가 의

결한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회의 행정부 감시·견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2항).

Ⅲ. 검토의견: 금감원을 통한 국정조사·인사청문회 관련자 신용정보 제공

□ 개정안은 국정조사 및 인사청문회 관련 위원회가 의결을 통해 금융감독원장에게 관련자 신용정보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한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신용정보회사등과 신용정보업관련자에게 그 신용정보를 요구·제공받아 국회에 제출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42조(업무 목적 외 누설금지 등) ① (생략) ② 신용정보회사등과 신용정보업관련자가 이 법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에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제1항에 따른 업무 목적 외의 누설이나 이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u><신설></u>	제42조(업무 목적 외 누설금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 -----. 1. <u>다음 각 목의 의결에 따른 금융감독원장의 신용정보 제공의 요구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행위</u> <u>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가 의결한 경우</u> <u>나.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자료로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국회법」 제65조의2제3항에 따른 특별위원회가 의결한 경우</u> 2. <u>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에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행위</u>
<u><신설></u>	

□ 현행법 제42조에 따르면, 신용정보회사등¹⁾ 및 신용정보업관련자²⁾는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 및 사생활 등 개인적 비밀을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할 수 없으며,³⁾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⁴⁾

□ 한편, 현행법 제32조제1항⁵⁾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그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같은 조 제6항⁶⁾에서는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예외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
- 1) “신용정보회사등”이란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를 말함(법 제15조제1항).
 - 2) “신용정보업관련자”란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를 말함(법 제42조제1항).
 -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업무 목적 외 누설금지 등) ① 신용정보회사등과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이하 “신용정보업관련자”라 한다)는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 및 사생활 등 개인적 비밀(이하 “개인비밀”이라 한다)을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벌칙) ① 제42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①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⑥ 신용정보회사등(제9호의3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데이터전문기관을 포함한다)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4. (생략)
 5.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6. 범죄 때문에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상황에서 제5호에 따른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이하 생략)
 7.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검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관할 관서의 장이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구함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8. ~ 9의4. (생략)
 10.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이하 생략)

- ‘법원의 제출명령,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조세 관련 법률에 따른 관할 관서장의 요구나 과세자료 제공 요구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함.
- 국회의 서류 제출 요구 등은 현행법 제32조제6항제10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⁷⁾는 국회에서 안전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서류 등의 제출요구를 받은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라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개인신용정보 등 개인정보 관련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 예외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그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⁸⁾

7)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증인출석 등의 의무) 국회에서 안전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와 서류 및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영상물(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제출 요구를 받거나, 증인·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

8)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 7. (생략)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하 생략)

□ 현행법 규정을 종합해 보면, 신용정보회사 등이 국회의 서류 제출요구에 따라 정보주체 관련 신용정보를 제출하는 것은 이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법률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국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정보 제공은 업무 목적 외 누설이나 이용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 그러나, 실제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⁹⁾에 따라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국회의 서류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주장하는 사례가 많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회의 서류 제출 요구와 관련하여 ‘국회가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공익이 침해 우려가 있는 사익보다 더 크면서도, 요구자료가 안전심의 등 목적과 직접 관련되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고 결정¹⁰⁾한 바 있음.

□ 개정안은 이와 같이 국회의 서류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동법에 국정조사 및 인사청문회 관련자의 신용정보를 국회의 요구에 따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 금융감독원장이 개별 신용정보회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를 취합하여 제출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국회 서류 제출 요구와 관련

9)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0) 제2020-04-050호 결정

된 불편을 완화하고 행정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아래 사항에 대하여는 논의가 필요해 보임.

□ 첫째, 개정안은 국정조사 및 인사청문회 관련자의 신용정보를 금융감독원이 신용정보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신용정보가 금융감독원을 거쳐 국회로 제출되는 과정에서 적절히 보호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심사할 필요성이 있음.

- 참고로, 동 개정안은 금융거래 비밀보장의 예외로서 금융감독원장이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국회에 제공하기 위해 금융회사 종사자로부터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¹¹⁾과 유사한데, 이 사례는 동법 제4조 제2항¹²⁾에서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금융회사의 해당 점

1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 없이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2. (생략)

3.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사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거래정보등의 제공 (이하 생략)

1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표준양식에 의하여 금융회사등의 특정 점포에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거래정보등

포를 ‘특정’해 요구하도록 하는 특별규정으로 인해 금융감독원장이 중간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두 법률(안)을 동일한 취지로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금융위원회는 ① 개정안은 필요 자료의 범위 등이 세부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금융회사가 보유한 방대한 민감 정보가 금융감독원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고, ② 금융기관 건전성 유지 및 금융소비자 보호 등 금융감독원 본연의 업무와 무관하므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 둘째, 개정안은 현행법 제42조의 업무 목적 외 누설금지 규정을 개정하여, 국회의 요구에 대응하여 신용정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업무 목적 외 누설이나 이용으로 보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회가 국정조사나 인사청문회 관련 자료를 원활히 확보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이나,

- 현행법 제32조제1항 및 제6항¹³⁾에 따라 법률이 정하고 있는 예외사항

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보유기간, 보유 수, 거래 규모 및 거래 방법 등 명백한 자료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탈루혐의가 인정되어 그 탈루사실의 확인이 필요한 자(해당 부동산 거래를 알선·중개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채납액 1천만원 이상인 채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하여 필요한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구하는 경우에는 거래정보등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부서에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1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①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신용정보회사등(제9호의3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데이터전문기관을 포함한다)이 개인신용정보를

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 따라서, 현행법 제42조(업무 목적 외 누설금지 규정) 보다는 동의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예외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제32조제6항을 개정하여 관련 사항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 셋째, 개정안은 국정조사 및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제공 받으려는 것인데, ‘국정조사’의 경우에는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금융거래정보를 국회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¹⁴⁾의 입법례가 있으므로 긍정적인 방향의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4. (생략)
5.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6. 범죄 때문에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상황에서 제5호에 따른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이하 생략)
7.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검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관할 관서의 장이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구함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8. ~ 9의4. (생략)
10.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이하 생략)
- 1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2. (생략)
 3.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사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거래정보등의 제공 (이하 생략)

- ‘인사청문회’의 경우에는 공직후보자, 배우자, 자녀, 기타 공직후보자
관련자 등에 관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요구가 있을 수 있어 그 대상 정
보의 범위가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인사청문회의 원활한 수행
과 개인정보 보호 측면을 함께 고려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성
이 있어 보임.
- 이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는 국회 관계 법률과 현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이미 신용정보회사 등이 국정조사 및 인사
청문회 등을 위해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개정 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 금융감독원은 신용정보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상의 금융거래정보보다 폭넓은 정보¹⁵⁾를 담고 있어 개정안에 따를 경
우 사생활 침해가 과도하게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밝힘.

문 의 처

02)6788-5113

15) 신용정보는 금융거래정보 외에도 ① 금융자산 외 거래내용정보(신용공여, 신용카드, 보험금 청
구·지급 정보 등), ② 신용도 정보(채무불이행 정보 등), ③ 신용거래능력 정보(개인의 직업,
소득, 재산, 채무 및 납세 실적 등), ④ 기타정보(성년후견, 국세체납, 벌금, 채무조정정보 등)
까지 포괄함.